

# 한국중재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김 흥 규\*

- I.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중재제도의 창시와 그 배경
- II. 대한상사중재원의 현황
  - 1. 조직현황
  - 2. 회원 및 중재인(후보자)명부 현황
  - 3. 클레임처리현황
- III. 한국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현황
  - 1. 총 설
  - 2. 한국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특징
- IV. 한국중재법 및 중재규칙의 개정

## I.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중재제도의 창시와 그 배경

한국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상설적 중재제도가 창설된 것은 1996년 3월 16일에 중재법이 공포·시행되고, 이어서 3월 22일에 대한상공회의소내에 상사분쟁의 중재를 전담하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가 발족된 때에서 비롯된다.<sup>1)</sup>

한국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설적 중재기구가 발족하기 전단계에 있어서는,

\* 연세대 법대 교수, 한국중재학회 회장.

1)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발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 30년사」, 54면 이하 참조.

1912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법제로서 일반민사소송법 제8편 중재절차가 한국에도 시행되었으나, 1960년에 한국민사소송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1960년 당시 한국정부가 민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일본민사소송법이나 독일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절차에 관한 규정을 민사소송법전에 규정하지 아니한 이유는, 문서로 남겨져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당시까지 실제로 중재절차에 의한 중재가 거의 행하여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sup>2)</sup> 설사 중재에 의한 사적 분쟁의 해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서구에 있어서 근대적 상설적 중재기구가 생기기 전의 19세기 이전에 있어서와 같았다. 즉, 중재는 주로 우인, 동족, 파트너 등의 상호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이 그 대상이 되었고, 그것도 임시적(ad hoc) 성격의 것이고 조정, 알선, 화해 등과 명백히 구별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되고 난 뒤에 중재부탁을 합의하는 것(Submission, Compromise)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sup>3)</sup>

그런데 1960년대의 후반기부터 한국의 대외무역이 활발하게 됨에 따라 월연적으로 많은 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품질불량, 선적불이행, 수수료미납, 수량부족, 포장불량 등을 이유로 하는 외국 바이어들로부터 클레임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측에 있어서도 상품의 수입과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입국과 수출국의 외국기업에 대하여 위에 든 같은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가장 합리적 영리추구에 예민한 상공인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제무역에 관한 상설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국제상사 중재위원회의 설립에 착수하였다. 그것은 국제무역분쟁의 처리방법으로서는, 소송이나 조정이나 알선이나 상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재(Arbitration, Schiedsgerichtsbarkeit)가 가장 유효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유주의 국가간의 국제무역에 관해서 그러할 뿐 아니라,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는 더욱 중재가 무역분쟁해결에 가장 유효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주로 사적 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 반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2) 한국에 일본민사소송법 제8편 중재절차가 시행된 배경과 그 경과에 대해서는 김홍규, 「韓國における仲裁の現状」,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刊(1993), 1부 이하 참조

3) 우리나라의 상사·중재제도의 연혁에 대해서는 목영준, "우리나라 상사·중재제도의 현황과 전망," 「민사판례연구」 제14권(박영사), 471면 이하.

또는 공사 등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사적 기업과 국가 또는 공사간의 무역분쟁을 소송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sup>4)</sup>

이리하여 드디어 1966년 3월 22일에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국제상사 중재위원회의 창립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 상설중재법원은 1970년 3월 27일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법인으로 확대개편되었고, 이어서 1980년 8월 29일에는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명실공히 국내외의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적(quasi judicial)기구로서 국가법원의 분쟁해결제도와 병립적·중첩적·선택적 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파리의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미국의 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 AAA), 영국의 런던중재법정(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 LCIA), 일본의 국제상사중재협회(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 JCAA)와 같이 국제적 무역거래에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재 또는 장래의 무역분쟁이 중재계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사법상의 분쟁이 중재계약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상설적 중재법원으로서 그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의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발생된 중재사건뿐만 아니고 국내의 사법상의 거래에서 발생된 중재사건에 대하여도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는 상설 중재기구가 되었다. 현재 서울에 본부가 있고 부산에 지부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1966년에 이르러 중재법이 공포·시행되고 이어서 상설적 중재법원이 설립됨에 따라 한국에도 19세기 및 그 이전의 중재로부터 20세기의 중재의 일반적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즉, 일반적 경향으로 장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한 중재조항이 약관이나 표준계약서식으로 미리 마련되어 있고, 이 약관 내지 표준계약서식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는 설정되고, 또한 특

4) 사회주의국가에 있어서 무역분쟁해결에 대한 제도로서 구소련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던 무역중재위원회(Foreign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와 중국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에 관한 문헌으로는 정기인, “소련의 무역분쟁처리제도,” 「중재연구」 제10권 제4호 및 제13권 제3호 참조.

정의 상설중재기관이 미리 지정되고, 당해 중재기구의 규칙에 의하여 중재인의 선임방법, 중재절차 등이 정해져 있다. 이리하여 한국에서는 ad hoc 중재는 사실상 거의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장래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중재부탁을 험의해 두는 이른바 중재조항(Arbitration Agreement, Clause Compromissoire)<sup>5)</sup>에 의한 상설중재기관에 의한 중재인 준사법적(quasi juridical) 중재가 일반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사중재원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 인간의 국제적 무역거래에 있어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상설적 중재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아시아, 나아가서는 전세계의 제3국간의 국제적 무역분쟁의 해결을 위한 상설적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설립되기 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국제적 무역거래분쟁의 해결을 담당하는 상설적 중재기관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국제적 무역분쟁이 빌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은 「동경중재」, 「런던중재」, 「ICC중재」, 「뉴욕중재」에까지 가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이제부터는 당사자간의 중재의 합의만 있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서도 중재로 분쟁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5)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표준중재조항(Standard Arbitration Clause)은 다음과 같다.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그 속력을 가진다.(“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

## II. 대한상사중재원의 현황

### 1. 조직현황

1966년 3월 22일에 서울에 상설중재법원으로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Committee)가 설립되고 이 상사중재위원회가 중재법에 근거해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각 분야의 전문가와 경험자로 중재인명부를 비치하고 중재법원의 기구도 완비하였다.<sup>6)</sup> 그 후 1970년 3월 27일에는 중재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독립한 법인으로 확대개편하는 정관개정을 하여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대한상공회의소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사업과 예산을 승계하였다.<sup>7)</sup> 이어서 1980년 8월 29일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개편을 단행하여 국내외의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준사법적(quasi judicial) 기구로서, 국가법원의 분쟁해결제도와 병립적·종합적·선택적 재도로 되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이사장, 원장 및 3부 1실 1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중재원의 구성원인 무역에 종사하는 법인 및 자연인 기타 중재원사업에 유관한 법인 및 자연인으로 구성되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통상 중재원의 이사장으로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선임된다.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중재원의 예산, 인사, 운영의 기본방침의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8)</sup> 원장은 중재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신뢰를 받고 있는 사회적 저명인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한다. 원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제외하고 중재원을 대표하며 중재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한다.<sup>9)</sup> 중재원

6) 1967년부터 1969년까지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클레임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 30년사」(1996), 62면 이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7) 1970년부터 1979년까지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처리한 클레임 접수 및 처리현황은, 대한상사중재원, 상계서, 76~80면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8)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정관 제12조~제17조 참조.

의 업무분장은 총괄지원부, 클레임처리부, 중재부, 홍보실 및 부산지부가 있고, 이를 각 부원은 주로 중재에 관한 분야(법학, 경제, 경영학분야)를 전공한 중재의 실무에 적합한 인물을 선발한다. 정원은 44명이며 협원은 35명이다. 각 부서의 활동으로는 총괄지원부는 총무·기획·교육을, 클레임처리부는 알선·연구를, 중재부는 국제중재·국내중재·국제협력을, 홍보실은 광고·강좌·상담 등 홍보와 중재사례집 발간 및 도서관리 등을, 그리고 부산지부는 부산·경남지역의 상사분쟁 처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sup>10)</sup>

각부가 담당하는 주요업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재부가 담당하는 중재 이외의 중요한 업무로서 조정이 있다. 조정(Conciliation)은 중재신청의 접수일로부터 국내중재의 경우는 15일, 국제중재의 경우는 3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조정의 요구가 있었을 경우, 중재원사무국은 중재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를 시도할 수 있다. 조정은 중재원사무국이 중재인명부 중에서 선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의 조정인에 의하여, 조정인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으로 보고, 조정의 결과는 화해에 의한 중재판정의 방식에 의하여 처리하고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인이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는 종료하고, 바로 중재규칙에 의하여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는 약정에 의하여 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요컨대 중재절차가 진행하기 전에 양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중재인과는 별개의 조정인이 선정되고 조정을 시도할 수 있다.<sup>11)</sup>

홍보실이 담당하는 「상담」은 특히 대외무역거래에 있어서 계약서작성이나 분쟁예방 및 해결방법의 안내를 비롯하여, 분쟁관련외국법규, 제도, 관습 및 관련 자료의 안내, 기타 중재원의 사무에 대한 안내의 무료 서비스를 한다. 또한 클레임 처리부가 담당하는 「알선」은 국내외에 있어서 상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분쟁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으로 중재원이 공정한 제3자의 입장에서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재원은 외국업자에 의하여 제기되는 클레임에 한하지 아

9) 상계 주 총조

10) 1996. 9. 1.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조칙현황

11)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18조 조정에 의한 해결 참조.

니하고 국내업자로부터 외국업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클레임에 대해서도 알선을 한다. 주로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의 분쟁이 알선의 대상이 된다.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상기의 기구 외에도 상사중재법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동 위원회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 변호사 등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주로 중재법·중재규칙의 해석과 그 개정, 외국중재법제 등에 관하여 중재원장이나 중재판정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문에 응하고 있다.<sup>13)</sup>

## 2. 회원 및 중재인(후보자)명부 현황

1996년 8월 31일 부로 중재원의 회원은 60,338사(명)이며 그 중 통상회원(무역업자)은 60,166사이며, 특별회원(교수, 변호사, 사업경험자, 회사원)은 172명이다.<sup>14)</sup> 참고로 대한상사중재원의 운영예산과 운영자금은 회원의 연회비, 중재요금, 국고보조금, 무역진흥기금, 기타 수입으로 형성되고 있다.<sup>15)</sup>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중재인(후보자)명부가 비치되어 있다. 적정·공평하고 신속·경제적이며 예측가능한 중재절차의 진행과 중재판정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망있고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후보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996년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는 중재인(후보자)은 총 752명이다. 그 중에서 법조계(변호사) 185명, 실업계(무역, 노동, 기계, 금속, 증권 기타 각 분야) 160명, 학계 각 분야 183명, 단체대표 85명, 공인회계사·변리사 26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재인후보 중에는 외국인 11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미국인 31명, 일본인 17명, 프랑스인 9명, 독일인, 이태리인이 각 6명, 리시아인 5명 등으

12) 대한상사중재원에는 상사중재법무위원회 외에 외부에 특정의 자문기관이 없다. 그러나 중재원의 이사회를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함으로써, 중재원운영에 각 분야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연직 이사에는 통상산업부 동상무역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사장,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수출입분과위원장, 한국무역협회 재정분과위원장, 한국무역대리점협회 상근부회장, 그 외 총회에서 선임하는 2인의 학식과 경험 있는 사이다.

13) 상세한 회원현황은 대한상사중재원, 전계서, 303면 참조.

14) 대한상사중재원의 재정현황과 연도별 운영기금현황은 대한상사중재원, 전계서, 331~335면과 387~389면 참조.

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어 있다. 중재인(후보자)명부에는 각 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력 등이 기재되어 있고, 당사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중재인(후보자)명부를 입수할 수 있다.”<sup>15)</sup>

### 3. 클레임처리현황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알선, 상담 기타에 관한 통계자료에는, 특히 원인별, 품목별, 지역별로 본 자료가 상세히 보고되어 있다.<sup>16)</sup> 1995년도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접수현황은 국내 61건, 국제 18건, 합계 79건이고, 알선접수현황은 국내 137건, 국제 491건, 합계 628건이고, 상담접수현황은 국내 1,097건, 국제 1,333건, 합계 2,430건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재사건접수가 1993년도에는 68건 1994년도에는 72건, 1995년도에는 79건으로 증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상사분쟁해결에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이용실적이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경합되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지적할 것은 아직도 중재제도에 대한 홍보가 일반상공인에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서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에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재원은 그 동안에도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앞으로도 방송, 언론홍보를 통해서 중재제도설명회, 중재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서 일반국민에게 중재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업이나 상공인들이 국내거래나 국제무역거래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중재조항을 널리 홍보해서 계약서에 계약조항으로 넣도록 권장하는 노력도 더욱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15) 중재인(후보자) 선문분야별 현황은 대한상사중재원, 전 께서, 303면 참조

16) 대한상사중재원, 전 께서, 293~303면 참조.

### III. 한국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현황

#### 1. 총 설

한국에 있어서 상설적 중재법원에 의한 근대적 중재제도가 도입된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1966년 3월 16일에 중재법이 공포·시행된 것에서 비롯된다. 즉 1996년 3월 16일에 중재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년 동월 22일에 중재법에 근거하여 오늘날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전신인 대한상공회의소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고, 동 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동년 10월 13일에 제정하여 이 중재규칙에 따라서 명실상부한 상설적 중재법원에 의한 중재가 한국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3년 5월 9일에는 한국정부가 1958년 6월 10일에 체결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June 10, 1958)」에 가입함으로써 동협약이 한국에서도 효력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특히 외국중재판정의 한국에서의 승인·집행 및 한국에서의 중재판정을 외국에서의 승인·집행에 적절히 대비하게 되었다. 이어서 1973년의 중재법 1차 개정과 1973년, 1989년, 1993년, 1996년의 4차에 걸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개정을 통하여 한국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중재원의 조직과 절차에 있어서 중재제도의 국제사회에 있어서 현대적 발전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1973년 10월 26일에 대한상사중재협회와 일본동경국제중재협회 사이에 “양국상설중재기관 상호간의 중재업무협조, 정보자료교환 및 중재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중재자는 피신청인국가로 한다. 다만 양기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국가로 한다”는 취지의 중재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의 상설적 중재기관과 일본의 상설적 중재기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게 된 이래 1995년 9월 27일 한국의 중재기관과 스웨덴 중재기관간의 동내용의 험정체결에 이르기까지, 미국·인도·러시아 등 30개의 외국중재기관과 대한상사중재원간에 동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상사중재의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2. 한국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의 특징

### (1)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동일원칙의 적용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조에서는 “국내중재(Domestic Arbitration)는 국내에 주된 영업소나 주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간의 중재를 말하며, 국제중재(International Arbitration)는 국내중재를 제외한 중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 이외의 지에 그 주되는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중재를 국제중재로 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조의 이와 같은 규정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1958년 6월 10일의 뉴욕협약 제1조에서 이 조약의 적용대상인 외국중재판정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 및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 적용한다”고 하는 것에 합치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것은 한국은 위 뉴욕협약의 가입국이므로 이 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 중재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는 국제경제무역에 있어서 발생한 분쟁사건을 수리한다”는 규정과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492조에서 국제중재를 「국제거래상의 이해에 관한 중재」라고 규정한 것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조는 동례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sup>17)</sup> 뿐만 아니라 UNCITRAL Model Law 제1조 제3항에서 “중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제적인 것으로 한다. (a)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당해합의의 체결당시에 상이한 국가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b) 다음 중의 어느 한 장소가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국외에 있는 경우 ; (i) 중재합의에서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 중재합의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중재지, (ii) 상업관계상의 업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 행되어야 하는 장소 또는 그 분쟁의 주제사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소, 또는 (c) 중재합의의 주제사항이 2개국 이상과 관계되어 있

17) 小島武司=高桑昭編, 「注解仲裁法(1988)」, 535면 참조.

는 경우라고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이와 같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서 내국중재와 외국중재를 구별하고 있지만, 국내중재와 국제중재에 있어서 중재계약, 중재계약의 방식, 중재절차, 중재에 관한 법원의 원조·협력에 관하여 현행중재법과 협약사법의 규정의 해석론에 의하여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그것은 중재의 자치적 성격을 중시하는 제외국의 입법·학설의 동향에 따랐기 때문이다. 다만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등에 관해서는 중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신술한 바와 같이 뉴욕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 앞으로의 중재법 개정에서 명문으로 상세한 규정을 두기로 예정되어 있다.<sup>18)</sup>

## (2)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

한국중재법 제2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현재의 분쟁뿐만 아니고 장래의 분쟁도 중재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뉴욕협약 제2조 제1항, 일본민사소송법 제786조, 독일민사소송법 제1025조 제1항,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2059조 및 제2060조도 거의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법,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파산법 등에서 규제되고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중재의 대상으로 되고 있지 아니하다. 그것은 중재의 이용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거래에서 기술거래, 자본거래도 날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국제파산사건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확충정비에 대해서도 중재선진국인 미국 등 실무나 이론을 참고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에 지면하고 있다.<sup>19)</sup>

또한 Holland 민사소송법 제102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재인에게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단을 하는 데 그 전제가 되는 새개의 사

18) 즐고, “중재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II),” 「중재」 제277호, 52면 이하 참조

19) Goldsmith, “The Arbitration of Patent Dispute,” The Arbitration Journal 1979년 6월호 참조.

실의 존부 또는 내용을 확정하는 종래의 중재감정계약<sup>20)</sup>을 중재의 대상으로 하거나, 예컨대 토지공사계약, 플랜트건설계약 등과 같은 장기국제계약에 있어서 사정의 변화 등에 대응해서 기존의 계약조항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계약조항에서 공백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보완시켜서 그것을 계약의 일부로 하는 계약의 적용 및 보충을 중재대상으로 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대상으로 되고 있다.<sup>21)</sup>

### (3) 중재인의 선임방법

한국중재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중재계약에 의하여 중재인의 선임방법 및 그 수를 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국내중재나 국제중재를 불문하고 ad hoc중재는 거의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거래시에 체결하는 계약조항 속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에, 국내거래의 경우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인 선임방법 중재절차를 정하고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 또는 특정의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라서 중재인선임방법 중재절차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 경향으로 되어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19조 내지 제27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임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이 당사자에 갈음하여 선임한다. 중재인의 수는 합의가 없는 한 사무국이 1인 또는 3인으로 정한다. 사무국은 중재인(후보자)명부 중에서 수인을 선택하여 그 인명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가 의장중재인과 기타 중재인을 각각 구별하여 선정의 희망순위를 표시하는 번호를 붙여서 사무국에 반송하도록 한다.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그 인명표가 반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희망순위는 전원에 대하여 동일순위로 지명된 것으로 본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재인을 선임한다. 사무국으로부터 선정의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20) 중재감정계약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Hamburg 상품거래협회의 품질중재감정이다. 상품에 대한 저분권을 가진 거래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품의 품질 내지 등급감정의 절차에 따라 전문가인 중재감정인이 감정을 하고 이 감정은 당사자를 구속한다. Schwab / Walter, Schiedsgerichtsbarkeit(Munchen : C.H.Beck, 1990), Kap. 2, IV., S.16ff. 참조.

21) 중재감정계약 및 계약의 적용 및 보충을 중재대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졸고, “중재감정 배약,” 「이시윤박사 화답논문집(하)」 (1995), 150면 이하 참조.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무국을 통하여 양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이내에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적식의 이의가 제기되면 그 중재인은 선임에서 제외된다.<sup>22)</sup>

그 밖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23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국적이나 거주하는 국가가 다른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의 요구가 있으면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은 당사자의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제3국인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3)</sup>

#### (4) 중재계약의 유효성이나 중재인의 중재권한의 존부판단(Kompetenz-Kompetenz)에 대한 중재인의 권능

한국중재법 제10조에는 당사자가 중재계약의 유효성이나 중재인의 중재권한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중재인은 스스로 그 점에 관하여 판단해서, 이를 궁정하는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사소송법 제1037조, 프랑스민사소송법 제1466조, 일본현행민사소송법 제797조는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종래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 대륙법계에서는 중재인의 자율이 강조되는 경향이 강해서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의 유무를 결정하는 제1차적 판정권을 갖는다. 즉 중재인은 중재인의 중재판정의 권한의 유무에 대하여 최종적 결론에 이르기 전에도 본안에 대하여 심리를 속행하고 중재판정을 할 수 있는 재량적 권한을 갖는다. 법원에 의한 감독 내지 통제는 중재판정이 있은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나 집행단계에서 중재절차부적법의 항변으로만 다투게 하여 법원이 최종적 판정을 하도록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반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대체로 법원에 의한 감독이나 통제기능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통일중재법 제2조 제2항, 미합중국중재법(미합중국법전 제9편) 제4조에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법원에 대하여 무효의 중재계약에 기하여

22) AAA의 상사중재규칙 제12조에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내한상사중재원, 상사중재연구총서 I, 「상사중재규칙」, 12면 참조).

23) AAA의 중재규칙 제15조와 동취지의 규정이다(대한상사중재원, 상계서, 14면 참조).

중재절차를 개시하였거나 개시하려 한다는 주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약식소송에 의하여 그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이미 개시되었거나 개시하려고 하는 중재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하게 중재절차의 개시·속행이 거부되었을 때에는 약식소송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절차의 진행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sup>24)</sup>

생각건대 자율존중의 중재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더욱더 착실히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UNCITRAL모범법 제16조 및 UNCITRAL중재규칙 제21조 그리고 일본의 중재법시안 제20조에도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제1차적 판정권을 동일중재절차내에서 중재인이 가진다는 것 그리고 중재판정을 할 권한을 중재인이 가진다는 취지의 중재인의 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오즈 사후에 중재판정추소소송 또는 집행허용의 선언을 구하는 소송(UNCITRAL모범법 제34조·제35조, 일본중재법시안 제41조·제48조)에서 항변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통일중재법이나 미합중국중재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절차의 개시·속행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나 중재인에 대하여, 약식소송 내지 가처분에 의하여 중재신청의 취하나 중재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관할법원에 상대방 당사자나 중재인에 대하여 중재계약무효확인의 소나, 중지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중재인에게 중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여 중재절차의 개시나 속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확정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법원이 중재계약의 효력유무나 중재인의 중재판정을 할 수 있는 권리유무에 대한 최종적 판정권한을 가지는 이상, 이론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위의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후에 중재판정취소의 소나 집행허용선고를 구하는 소에서 이 기관력을 원용하여 바로 응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진행하여 중재판정을 하더라도 결국 중재판정취소의 소에서 취소될 것이 확실하므로 중재

24) 내한상사중서협회, 「상사중재법규집」 Vol. VII.(미국통일중재법 제2조), 53면 및 Vol II (미합중국중재법 제4조), 24면 참조.

절차의 속행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한 확인의 소가 제기되면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중지 내지 정지해서 소송의 경과를 지켜볼 것이다. 따라서 중재계약의 무효확인의 소나 중재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최종성을 부여하는 이른바 중재권한 최종판정권부여의 합의(Kompetenz-Kompetenz Abrede)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우리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하여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다. 독일중재위원회는 중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중재인(중재법원)은 자기 자신의 판할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는다(Das Schiedsgericht kann auch über die Gültigkeit dieses Schiedsvertrages bindend entscheiden)”는 특별규정을 넣도록 권장하고 있다.<sup>25)</sup>

우리 중재법개정시안에는 이에 대하여 규정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 (5) 중재절차

한국중재법 제7조에는 중재절차는 당사자가 중재계약에서 정할 수 있고,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중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중재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ad hoc*중재는 거의 행하여지지 않고 상설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부탁하는 합의를 국내중재나 국제중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다. 당사자가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부탁하는 합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을 당해 중재절차의 준칙으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으로 본다.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섭외사법상의 이른바 절차법의 속지성을 강조하여 “중재절차는 중재원소재지법에 따른다”는 원칙에 입각한 중재법정지법설과 중재절차자율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법정지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재

25) P Schlosser, “German Arbitration Law and Practice” 推橋邦雄 譯, 小島武司 編譯, 「各國仲裁の法とプラクティス」(1992, 中央大學出版部), 30면 이하 참조

절차법을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당사자자치법설이 대립된다.

UNCITRAL모범법 제1조 제2항은 엄격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 중재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사견으로는 중재절차의 준거법에 관한 한, UNCITRAL모범법이 채택하고 있는 엄격한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국을 중재지로 하여 한국에서 행하여지는 중재에 관하여 한국의 법원의 원조와 협력이 필요한 경우 외국법을 절차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곤란한 조정문제가 발생한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함이다.<sup>26)</sup>

#### (6) 중재절차의 대리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7조에는 “변호사 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중재법원은 대리인이 중재절차대리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재는 소송과는 다르므로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관철할 필요가 없다.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법인이나 영업체의 당해사안에 대한 영업담당자도 법인이나 영업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법률가인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중재의 본질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재절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다.

#### (7) 중재판정의 판정기준

한국중재법에는 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당사자간에 중재판정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실체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선과 형평에 의할 것인가에 대하여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 종전까지는 중재판정의 기준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고, 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재량에 따라서 실체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선과 형평에 의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유력하였으나 근자에 와서는 실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으로 되

26) 澤木敬郎, 仲裁法の立法論的研究, 仲裁研究會, 1993, 107면 참조.

었다.<sup>27)</sup>

그런데 중재판정의 기준으로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실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중재 또는 섭외중재의 경우이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기준으로서 특정국가의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면 되지만, 명시적으로 특정국가의 실체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중재인이 재량으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의 실체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중재판정의 판정기준으로 실체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보는 이상 섭외중재에 있어서는 중재지의 섭외사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국가의 법률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섭외소송사건의 경우 당연히 법정지국의 섭외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이 정해지는 것과 그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sup>28)</sup>

또 당사자가 「선과 형평」에 의한 중재, 우의적 중재에 의할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선과 형평」을 중재판정의 판정기준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선과 형평」을 중재판정의 판정기준으로 함으로써 중재인으로 하여금 실체법의 엄격한 적용에서 생기는 형식성과 분규를 피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십분 활용한 거래실정에 맞는 판정이 가능하게 되어 중재의 본질 내지 기능과도 합치되기 때문이다.<sup>29)</sup>

한국중재법개정시안 제21조(중재판정의 기준)에서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기준이 되는 준거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고 명시적으로 준거법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이 적용가능하다고 보는 섭외사법의 원칙에 따라서 준거법을 결정한다. 또 당사자가 「선과 형평」에 의한 중재, 우의적 중재를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그 합의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재법개정시안은 UNCITRAL모범법 제28조 및 UNCITRAL중재규칙 제33조, 일본중재법연구회(대표 菊井維大)시안 제30조, 프랑스민사소송법 제1074조, 이태리민사소송법 제822조와 대체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27) 손경한·김화진, “중재법개정의 기본방향,” 「중재」(1995년 여름호), 26면 참조.

28) 김홍규, “중재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II),” 「중재」(1995년 가을호), 41면 참조.

29) 澤木敬郎, 「國際契約における仲裁條項と準據法條項」, 日本國際商事仲裁協會, 1974, 3면, 8면 참조.

### (8) 중재판정의 이유의 기재

한국중재법 제11조 제3항에는 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하여 중재판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에는 반드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종합하면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의 이유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중재판정취소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에 관한 뉴욕협약(1958년 6월 10일)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뉴욕협약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승인·집행의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한국법원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뉴욕협약 제5조에서 중재판정의 이유불기재를 승인·집행의 거부사유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내중재와는 달리 외국중재판정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에 이유의 기재가 없더라도 여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반드시 승인·집행 된다는 점이다.

### (9) 중재판정에 대한 구제

한국중재법 제13조에는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수단으로 법원에 대한 중재판정취소의 소가 인정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에서 배한자가 동판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소할 수 없으며 또한 중재판정무효확인의 소도 제기할 수 없다. 한국중재법 제15조에는 집행판결후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범죄행위 및 허위증거 그리고 중재판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한 판단유탈 등)를 이유로 한 경우에만 중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위 중재법 제13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사유는 내국중재판정의 취소나 집행허용선고의 장애사유가 될 뿐이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는 한국정부가 가입하고 있는 뉴욕 협약(1958년 6월 10일) 제5조에 규정하는 승인 및 집행거부사유가 없는 이상 당연히 승인·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한국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후단) 및 중재판정에 한국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9호(중재인의 실직과 같은 범죄행위 및 증거의 위조와 같은 허위증거)에 해당하는 재심사유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한국중재법개정시안에서는 뉴욕협약(1958년 6월 10일) 제5조, UNCITRAL모범법 제34조 제1항·제2항과 그 챠를 같이하여 국내중재판정의 취소사유 및 집행선고 장애사유와 국제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를 공통적으로 (i)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계약의 무효, (ii) 당사자가 중재인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방어의 기회의 결여, (iii) 중재부당의 범위일탈, (iv)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위배, (v) 중재자격(중재가능성)의 결여, (vi) 한국의 공서양속위반을 규정하였다.<sup>30)</sup>

중재판정의 취소판결 또는 집행불허가의 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 원중재계약의 효력에 대하여는 나누어지고 있다.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중재계약은 목적을 달성해서 소멸하고 다시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게 될 뿐이라는 견해가 그 하나이다.<sup>31)</sup> 다른 하나의 견해는 통상의 경우에는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중재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지만, 중재판정이 후일에 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면 결국 원중재계약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된다. 따라서 법원은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고 취소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해서 중재판정이 작출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중재법개정시안 제30조에서는 후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UNCITRAL모범법 제34조 제4항을 그대로 도입해서 “법원은 중재판정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중재인에게 중재절차재개의 기회를 주거나, 중재인이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재판정취소절차를 일정한 기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중재」(1995 가을호), 48면 이하 참조

31) Stein-Jonas-Schlosser, Kommentar zur ZPO 19 Aufl., § 1041 AnmIII RG 133, 16 114, 170 · 180, 174.

#### (10)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 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 현행중재법에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뉴욕협약(1958년 6월 10일)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승인 · 집행의 요건이 구비되고, 동 협약 제5조에 정하는 승인 · 집행거부 사유가 없는 이상 당연히 승인 · 집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섭외사법의 이론상 외국중재판정이 그 준거법에 따라서 성립요건 및 유효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내국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승인 ·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중재법개정시안 제31조에서는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외국중재판정은 중재법개정시안 제28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력있는 것으로서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중재판정을 원용하거나 그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중재계약의 원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IV. 한국중재법 및 중재규칙의 개정

오늘날의 국제거래, 국제교류의 급격한 진전에 따른 국제상사분쟁의 증가와 그 다양화에 동반하여 ADR의 평가 등 중재를 둘러싼 환경이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이리하여 세계각국에 있어서 중재법규의 개정이나 각국의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의 개정 또는 개정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각국의 중재법이나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또 현재 미치고 있는 1976년과 1985년에 채택된 UNCITRAL중재규칙과 모범법이다.

UNCITRAL중재규칙이나 모범법이 각국의 중재법이나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체로 두 가지 태양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가 UNCITRAL중재규칙이나 모범법을 전혀 수정없이 그대로 자국의 중재법 또는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으로 채택하거나 또는 극히 근소한 수정을 가해서 일괄

해서 채택하는 경우이다.<sup>32)</sup> 다른 하나는 UNCITRAL중재규칙과 모범법을 개개의 조문·규정을 취사선택해서 부분적으로 그 나라의 중재법이나 상설중재기관의 중재규칙에 채택하는 경우이다.<sup>33)</sup>

우리나라는 상술한 바와 같이 1966년에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이 제정된 이래 중재법에 있어서는 1973년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는 데 그쳤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있어서는 1973년, 1989년, 1993년, 1996년의 4번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특히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은 1976년의 UNCITRAL중재규칙이 채택된 이후인 1989년, 1993년, 1996년의 개정에 있어서는 UNCITRAL중재규칙을 최대한으로 수용하여 세계각국의 상설중재기관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절차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개정에 있어서는 UNCITRAL모범법이나 중재규칙을 충분히 수용하여 현대사회의 법적 현실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현행 중재법에 있어서 추상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나 중재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었던 규정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중재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중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을 보다 더 간소화하는 절차규정을 중재법 속에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중재제도의 충실과 국제경제사회에 있어서 신용도를 높여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2) UNCITRAL 모범법을 거의 일괄해서 채택한 국가 또는 지역은 오스트레일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키프로스, 홍콩, 나이지리아, 스코틀랜드, 폐루, 멕시코, 베뮤다, 튜니지 등을 꼽을 수 있다.

33) UNCITRAL 모범법을 부분적으로 채택하여 중재법을 개정한 국가는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등을 들 수 있다.